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787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25일

발 의 자 : 홍성룡, 강동길, 박순규, 김정환,  
김태호, 김경영, 김제리, 이상훈,  
조상호, 이병도, 박상구, 황인구,  
박기재, 최웅식, 이정인, 최 선,  
송아량, 김 경, 채인묵, 이호대  
의원 (20명)

##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수호에 앞장서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
-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 미뤄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대국민적 행동과 노력이 개시되어야 함.
-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역사 의식을 바로 세우는 첩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우리 땅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시대 이래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 주권과 민족정기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채택,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도발적 망동과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일본 정부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허위 주장을 명기하고 같은 해 7월에는 2019년부터 고등학생에게도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고시한바, 이는 현재 일본 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고 나아가 두 국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매우 악의적인 처사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해 그동안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한 채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보복조치 등을 취한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적 행동과 노력이 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왜곡된 한·일 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첩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